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2. 2 선고 2020가단12347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 독촉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2. 22

판결 선고 2021. 2. 2

주 문

1.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. 1.

31.까지 2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위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 날인 2020. 6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20,000,000원 외에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금의 변제기를 2020. 1. 31.로 정하였으므로,피고가 위 날짜 이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(민법 제397조).

판사 허윤범